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71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홍배·윤준병·정태호

김재원 · 김태년 · 김현정

김우영 • 박정현 • 서미화

김민석 • 민병덕 • 이광희

이용우 • 박지원 • 이연희

강훈식 • 문진석 • 복기왕

김한규 • 한준호 • 고민정

조승래 • 염태영 • 정진욱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 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는 회의
-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정 아 개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 <후단 삭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 다만.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작성하여야 한다.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 재 및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신 설> 조정을 목적으로 장관급 이상 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 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원 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 항과 같음)